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44 발의연월일: 2020. 9. 29.

발 의 자 : 김윤덕·박상혁·정춘숙

윤후덕 · 강훈식 · 민병덕

임종성 · 윤재갑 · 이정문

이동주・황 희 의원

(11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 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있으며,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·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경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,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,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제3항). 법률 제 호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시·도 및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의2(개업공인중개사등에	제34조의2(개업공인중개사등에
대한 교육비 지원 등) ①・②	대한 교육비 지원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 또
	는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교
	육에 관한 업무를 제41조에 따
	른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탁받아
	실시하는 경우 시·도 및 시·군·
	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
	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교육에
	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